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확대 등〉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680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확대 등 (안 제27조제1항제8호)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학영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9. 5.

다. 회 부 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하나로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3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확대 등 (안 제27조제1항제8호)

현 행	개 정 안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현행과 같음>
○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u>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u> (제27조제1항8호)	○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u>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 (제27조제1항8호)
- <신 설> - <신 설>	- 가. <u>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u> - 나. <u>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u> (안 제27조제1항8호 각목)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현행법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현행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추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추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최근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2021.1.26. 제정, 2022.1.27. 시행)된 바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_의안번호2203679)

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도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를 도모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임.

「국가계약법」 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 뿐 아니라, 중대재해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안전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음¹⁾.

1) 이미 「국가계약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계약법」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조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산재 사망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2022년	611	644
2023년	584	598
2024년 2분기	266	296

자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_의안번호2203679)에 따른 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그 위반·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상회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3679)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이외에 따로 별점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별점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실제로 중앙관서의 장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개정안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_의안번호2203679)이 입법 논의 중에 있으나, 두 개정안이 상호 체계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임.

동 개정안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있어 국가계약 이행과의 관련성을 명시하고 있음³⁾.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별점제도를 신설하고 일정 별점 초과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민간·공공부문 구분 없이 별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민간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이유로 별점을 산정하고, 이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근거로 활용할 경우 국가계약 이행과의 관련성이 전제된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음.

3) 개정안 안 제27조제1항제8호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따라서 별점 산정 및 관리 등에 있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 공공계약과의 연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진 않은지 논의가 필요할 것임.

둘째, 동 개정안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현행법은 사망 등 중대한 위해의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중대한 위해의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법령⁴⁾을 차용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로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의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할 경우 중대한 위해의 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준인 1명 이상 사망 등⁵⁾을 차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과 범위는 현행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보임.

더욱이 현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159조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2.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고

5)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의 기준으로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의 기준으로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을 규정하고 있음.

에 따라 처벌⁶⁾을 받고, 손해배상책임⁷⁾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받게 될 것인 바, 포괄적으로 동일 행위에 대해 중복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사망 등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할 경우 민간 업체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상 벌점 초과 사업주 제재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사망이 아닌 산업재해도 광범위하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산업재해까지 입찰참가제한의 근거로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이며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별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근거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 ----- ----- ----- ----- -----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8.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9. (생략)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0